



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20		
제정일자	2013.07.23		
개정일자			
개정번호	Ver. 0	총페이지	1

제정 2013년 7월 23일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 제51조 및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위촉) 위원의 위촉은 보직자와 비보직자, 직급별, 성별 및 전공계열별 안배를 고려하되, 일부 위원은 구성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의 제척) 위원이 위원회 안건 심의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4조(출석요구)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심의 사항에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기밀유지) 위원회 위원 및 업무관련자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